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40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하수도법」 개정(2021. 1. 5. 시행)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,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위임 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위임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명시(안 제16조2)
- 나. 법령 위임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여 정함(안 제2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 제61조·제73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1. 2. 8.~2. 28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부과당월”을 “부과하는 그 달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 부담금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사용료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가산금)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<u>부과당월</u>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1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<u>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8조(이의신청) ① <u>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29조(가산금) <u>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.</u></p> <p>1. <u>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: 미납요금x2/100x12개월x연체일수/365</u></p> <p>2. <u>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: 미납요금의 100분의 2</u></p>	<p>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<u>부과하는 그 달</u>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16조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<u>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</u></p> <p>제28조(이의신청) ① <u>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가산금) <u>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.</u></p>